의안번호	2203969
의 뢰 인	박범계의원
회 답 일	2024.10.30.
추계번호	24C366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9조의2 (상병수당)	○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급함(제2항) ○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을 평균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제3항) ○ 그 밖에 상병수당의 구체적 대상,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9조의2 (상병수당)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병수당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개정안은 질병,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총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건강보험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1].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2],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3][4]

❑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의 수급 대상, 지급 기준 및 기간,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여 추계가 곤란함

○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상병수당 지급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수당은 수급자의 최근 3개월간 보수 및 소득에 비례하되,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을 평균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명시

- 그 외의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한편,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법 제50조[5]에 따라 2022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시범사업은 요양방법 제한 여부에 따라 "근로활동불가모형"[6]과 "의료이용일수모형"[7]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대기기간의 길이, 최대 보장기간 등의 조합에

---

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2) 건강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4) 2021~2023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5)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따라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6) 요양 방법과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모형

7)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모형

따라 다양한 모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146억 5,000만원을 예산으로 배정하였으며, 이는 기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지속 지원분과 올해 신규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예산을 포함

○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신청 건수 및 지급 건수 등은 모형마다 상이하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본 사업 유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정부는 앞서 2025년 상병수당 본사업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년 2월)에서 이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하였음

[표 1]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계획(안)

구분	1단계('22. 하반기~)			2단계			3단계
				'23.7~'24.9		'24.10~	('24.7~)
지역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안양, 달서	용인, 익산	안양, 달서, 용인, 익산	충주, 홍성, 전주, 원주
소득 기준	소득무관(보편형)			소득 하위 50%(선별형)			
유형	근로활동 불가	근로활동 불가	의료이용 일수	근로활동 불가	의료이용 일수	근로활동 불가	근로활동 불가
대기 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7일	7일
보장 기간	120일	150일	120일	120일	90일	150일	150일

자료: 보건복지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